사 격 경 기

대구국제사격장

대구광역시 북구 문주길 170,금호동 ☎(053-312-0000)

대표자회의

○ 일 시 : 04월 15일(월) 14:00

○ 장 소 : 대구국제사격장

경기일정

● 경기일시 : 2019년 04월 16(화)~04월17일(수) <2일간>

● 경기장소: 대구국제사격장

대 회 사

한국 체육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체육 영재들의 축재인 "제33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체육고등학교 체육대회"를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에 자리잡은 본 교에서 주관하게 된 것을 무한한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전국 16개 시·도 선수단 여러분, 지도자와 귀빈여러분! 온 마음 담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부산에서 본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관심을 쏟아주신 **대한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전국체육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등 모든 분들의 협조와 성원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매년 개최되는 "전국체육고등학교 체육대회"는 대한민국 스포츠 미래를 이끌어 갈 우리 학생선수들이 더 큰 내일을 만들고 더 높은 꿈을 향해 나아가는 성장의 장이자 스포츠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화합과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친애하는 선수단 여러분!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아낌없이 발휘하여 매 경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동시에 이번 체전을 통하여 함께 끔을 꾸고 진정한 우정과 동료애를 쌓는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본 대회가 전국의 체육인과 '체고인'모두가 하나되어 스포츠 생존을 위한 미래 역량을 개발하고, 정의롭게 싸워 이기는 스포츠 정신을 발휘하는 배움의 장으로 오래도록 기억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양수도 부산과 부산 학교체육의 요람 부산체육고등학교를 찾아주신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 4월 15일 부산체육고등학교 교장 김창민

제33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체육고등학교 체육대회 임원명단

ㅇ 대 회 장 : 김창민

ㅇ 부대회장 : 손영욱

ㅇ 조직위원장 : 김경수

ㅇ 참 여: 배은주

ㅇ 임 원 장 : 서성동

ㅇ 총무부장 : 김재혁

* 담 당 : 박은혜, 권영희, 김지현, 양시정

ㅇ 기술대표(T D) : 신창화

ㅇ 심 판 부 장 : 이병준

* 10M 사선 쥬리 : 여갑순, 선우룡, 서인원, 서승우, 장나영, 이호기

* 기 록 실 쥬리 : 신창화, 문원기, 김미숙, 이종용, 최성순, 권영희

* 장비검사 쥬리: 이병준, 정주화, 이진행, 김재혁, 차상준, 박은영

* 10M 결선 쥬리 : 김병은, 이온찬, 강평구, 서건환, 최정현, 김성수

ㅇ 경 기 부 장 : 서성동

* 10M 수석통제관 : 여갑순

ㆍ사선통제관 : 김의경, 선우룡, 서인원, 강선미, 양은정, 이강연, 박병수, 손보라, 김성호,

황민승, 강평구, 김아람, 송민경, 장나영, 서승우, 이호기, 백영숙, 김병은,

서건환, 이온찬, 김성수, 최정현, 이광진

* 결선 수석통제관 : 여갑순

· 결선 사선통제관 : 김병은, 이온찬, 강평구, 서건환, 최정현, 김성수

· 결선 아나운서 : 백영숙

ㅇ 기 록 실 장 : 신창화

* 기록집계 및 전산 : 이민규. 신기록.

* 기록배포 : 최성순, 정선안

ㅇ 장비복장검사관 : 이병준, 정주화, 차상준, 이진행, 박은영, 김재혁

ㅇ 전자표적시설담당 : 성우텍

ㅇ 시 상 담 당 : 정선안, 강영도, 최성순,

ㅇ 시 설 담 당 : 오정택, 김진하, 장준철, 한두완, 김창동

ㅇ 의료 및 구급 : 의무 1명, 구급차 1대

ㅇ 대회운영보조요원: 최율, 안수빈, 김태영, 봉다예, 손영우, 박지은, 정효, 신현우, 오태근,

이왕정

ㅇ 소청심사위원회 및 질서대책 본부

·위 원 장: 서성동

·위 원 : 조현진, 신창화, 이병준, 정주화, 차상준, 신희영

제33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체육고등학교 체육대회 경기일정

10M 사선

월 일	구분	시간	부 분	인 원	결선	시상식
	장비 검사	13:30-16:00	장비검사			
4. 15(월)	대표자 회의	14:00	사격장 내 결선장 (임원 및 지도자 전원)	결선장		
	공식 훈련	14:00-15:30	남,여고부 공기소총	37(남) 32(여)		
	장비 검사	09:00-15:00	장비검사			
IN SITE	1조	10:00-11:15	남,여고부 공기소총	37(남) 32(여)	12:00 (남) 13:20 (여)	15:00
4. 16(화)	징 훈 현	14:30-15:30	남고부 공기권총	42		10.00
	공식 훈련	15:40-16:40	여고부 공기권총	36		
-	장비 검사	09:00-14:00	장비검사			
10M PISTOL	1조	10:00-11:15	남고부 공기권총	42	13:40	16:30
4. 17(수)	2조	12:00-13:15	여고부 공기권총	36	15:00	

- ※ 결선시간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공식 기록지를 확인바랍니다.
- ※ 장비검사 시간
- 4월 15일 13:00 ~ 16:00
- 4월 16일 ~ 17일 09:00 ~ 12:00, 13:30 ~ 15:00
- ※ 사대 배정표는 대회책자에 첨부하지 않으니, 별도 유인물이나 게시판의 스타트 리스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33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체육고등학교 체육대회 참가현황

참가현황

구 분	남고	남 계	여고	여 계	합계
공 기 소 총	37	37	32	32	69
공 기 권 총	42	42	36	36	78
합 계	79	79	68	68	147

시도별현황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 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 북	전남	경 북	경 남	제주	해 외	합계
공 기 소 총	8	5	8	8	7	4	0	8	4	0	0	4	0	8	5	0	0	69
공 기 권 총	8	2	8	0	4	4	8	8	4	4	8	4	8	0	8	0	0	78
합 계	16	7	16	8	11	8	8	16	8	4	8	8	8	8	13	0	0	147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체육고등학교 체육대회 기록대비표

.

참가현황

			개	인 전	단 체 전			
종 목	구 분	본 선	성 명	소 속	수립년도	기 록	소 속	스리너드
		결 선	8 8	꼬 큭	구입간포	71 =	~ 꼭	수립년도
	남고부	626.5	박하준	인천체고	2017.04	1866.4	인천체고	2017.04
 공기소총		250	권협준	경기체고	2018.04	1000.4		2017.04
0115	여고부	627.4	한가을	서울체고	2018.04	1853.0	서울체고	2018.04
		249.4	한가을	서울체고	2018.04			
	나고브	579	최보람	광주체고	2015.05	1717	경기체고	2000 05
 공기권총	남고부	240.2	임호진	충남체고	2018.04	1717		2009.05
0/128	어그브	571	한진선	충북체고	2018.04	1690	충북체고	2018 04
	여고부	241.2	추가은	경남체고	2018.04	1689		2018.04

 구분	사대번호	소 속	성 명	비 고	
단체	1 - 10	경기체고	김진환		
단체	1 – 16	경기체고	김건우		
단체	1 - 25	경기체고	이규진		
단체	1 – 33	경기체고	강원우		
단체	1 - 11	경남체고	안종현		
단체	1 - 20	경남체고	김진호		
단체	1 - 31	경남체고	김현우		
단체 단체	1 - 32 1 - 4	경남체고 경북체고	박주현 전은빈		
단체	1 - 4	경국제고 경북체고	조재민		
단체	1 - 24	경북체고 경북체고	김은일		
단체	1 - 39	경북체고 경북체고	양정환		
단체	1 - 5	광주체고	오준서		
단체	1 – 15	광주체고	최동렬		
단체	1 - 28	광주체고	오준영		
단체	1 - 34	광주체고	김정현		
단체	1 - 12	대구체고	김태경		
단체	1 - 13	대구체고	오해철		
단체	1 - 29	대구체고	김동국		
단체	1 - 36	대구체고	윤동규		
단체	1 - 6	대전체고	조만기		
단체	1 - 18	대전체고	이우준		
단체	1 - 22	대전체고	손수영		
단체	1 - 37	대전체고	박종호 저들어		
단체	1 - 27 1 - 9	부산체고 서울체고	정호영 김태민		
단체 단체	1 - 9	서울체고 서울체고	참대인 최준표		
단체	1 - 26	서울체고	최군표 이기승		
단체	1 - 40	서울체고	채준영		
단체	1 - 8	인천체고	정승우		
단체	1 - 17	인천체고	김성빈		
 단체	1 - 23	 인천체고	 신현준		
단체	1 - 35	인천체고	천민욱		
단체	1 - 7	전북체고	김대훈		
단체	1 - 14	전북체고	조경환		
단체	1 - 30	전북체고	이건호		
단체	1 – 38	전북체고	이민재		

 구분	사대번호	소 속	성 명	비고	
	1 - 47	강원체고	안설채		
단체	1 - 59	강원체고	안수연		
단체	1 - 60	강원체고	이지민		
단체	1 - 72	강원체고	박지윤		
단체	1 - 45	경기체고	유연지		
단체	1 - 57	경기체고	김지은		
단체	1 - 67	경기체고	이슬비		
단체	1 - 75	경기체고	서승희		
단체	1 – 48 1 – 44	경남체고 경북체고	권민아 오윤우		
단체	1 - 44	경국제고 경북체고	포판무 박진성		
단체	1 - 68	경북체고 경북체고	기선경 김서현		
단체	1 - 74	경북체고 경북체고	송민서		
단체	1 - 49	광주체고 광주체고	오채영		
단체	1 - 61	광주체고	김현		
단체	1 – 66	광주체고	한수화		
 단체	1 - 51	대구체고	고 · · · · · · · · · · · · · · · · · · ·		
단체	1 - 58	대구체고	이수연		
단체	1 - 64	대구체고	박은채		
단체	1 - 71	대구체고	권유정		
단체	1 - 46	부산체고	김민재		
단체	1 - 53	부산체고	강한희		
단체	1 - 62	부산체고	조소정		
단체	1 - 69	부산체고	김가은		
단체	1 - 52	서울체고	이현		
단체	1 – 56	서울체고	한가을		
단체	1 – 63	서울체고	정한결		
단체	1 – 73	서울체고	김정연		
단체	1 - 50	인천체고	이수정		
단체	1 - 54	인천체고	이승은		
단체	1 - 65	인천체고	배지영		
단체	1 – 70	인천체고	김지수		

	사대번호	소 속	성 명	비	고
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	1 - 30 1 - 38 1 - 52 1 - 54 1 - 26 1 - 35 1 - 44 1 - 53 1 - 27 1 - 41 1 - 49 1 - 60 1 - 28 1 - 39 1 - 62 1 - 62 1 - 25 1 - 40 1 - 45 1 - 37	경경경경경경광광광광대대대대대대대대기기체체체체체체체체체체체체체체체체체체체체	정 황 이 구 김 고 정 김 박 고 염 조 지 김 장 유 백 김 이 최 김 강 황 이 구 김 고 정 김 박 고 염 조 지 김 장 유 백 김 이 최 김 강 황 이 구 김 고 정 김 박 고 염 조 지 김 장 유 백 김 이 최 김 강 황 이 구 김 고 정 경 박 고 염 조 지 김 장 유 백 김 이 최 김 강		
단한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	1 - 48 1 - 24 1 - 32 1 - 43 1 - 59 1 - 21 1 - 33 1 - 47 1 - 56 1 - 23 1 - 34 1 - 46 1 - 57 1 - 22 1 - 36 1 - 42 1 - 55 1 - 29 1 - 31 1 - 61	부서서서스스스전전전전전전전전충충충/ 사세체체체스츠츠츠체체체체체체체체스스스스 사체체체체체체체체체체체체체제 고고고고과과과고고고고고고고고 학학학학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김이이이이김고이정서김김강문이김양박김김류김민이이이김고이왕연봉경준현 형선용희수곤민주동 전용 한 시청 전원 이 경동		

 구분	사대번호	소 속	성 명	비 고
구 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	사대번호 2 - 24 2 - 35 2 - 41 2 - 48 2 - 22 2 - 38 2 - 39 2 - 49 2 - 29 2 - 34 2 - 40 2 - 56 2 - 28 2 - 30 2 - 45 2 - 52 2 - 31 2 - 43 2 - 53 2 - 26 2 - 37 2 - 44 2 - 51 2 - 32 2 - 36	소 원원원기기기당당당당구구구구구울울울포포포포당당당당당장경경경경대대대대서서서서스스스스전전전전충충와원원기기기당당당당당구구구구울울울울포포포포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하는 학학학학학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명 서원영솔현빈영라면이 서원영송현 인정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단세	2 - 36	중남세고	막아딘	
단체	2 - 47	충남체고	정예원	
단체	2 - 50	충남체고	류연주	
단체	2 - 27	충북체고	한지선	
단체	2 - 33	충북체고	김예진	
단체	2 - 46	충북체고	김효음	
단체	2 - 54	충북체고	정희지	

대한사격연맹 www.shooting.or.kr

체육인 헌장

체육은 인간을 굳세게 아름답게 가꾸어 쓸모 있게 하는 정화과정이다. 그러므로 참된 체육관은 인간생활의 기초가 되어 슬기와 용기로서 행동하고 끈기와 희생으로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우리 국민은 솔선 체육활동에 참여하고 참된 체육인이 되어 문화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 1. 경기를 하는 사람은 경기를 사랑하고 즐기며 사욕이 없는 순수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그 성과에 만족한다.
- 2. 경기를 하는 사람은 심판의 판정에 복종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숭패에 구애됨이 없이 정정당당히 싸운다.
- 3. 경기를 심판하는 사람은 규칙에 따라 엄정하게 다스리고 경기를 명확하게 이끈다.
- 4. 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은 원만한 인품을 갖추고 항상 과학적인 기술과 창의적인 지도에 힘쓴다.
- 5. 경기를 관람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정신과 탁월한 기능에 갈채와 성원을 보내며 누구에게나 공정 무사한 태도를 갖는다.
- 위의 모든 체육인은 어디에서나 일상생활에 모범이 되고 밝고 바른 일의 역 군이 된다.

건전한 스포츠문화 조성을 위한 결의문

우리 선수·지도자 일동은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바른 인성을 기르는데 앞장서서 모범적이고 존경받는 체육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 선수 일동은 선수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동료선수를 존중 하며, 지도 선생님을 공경하고 자발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하여 경기력향상에 전념할 것을 다짐한다.

1. 우리 지도자 일동은 선수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지도자로서의 품 위에 손상되는 언행을 삼가며, 명랑하고 건전한 스포츠문화를 조성하여 모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체육인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한 다.

총포 소지자 준수사항

1. 소지자가 지켜야 할 법령

- 가. 소지허가의 갱신
 - 1) 소지허가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 부터 5년간이므로 만료일 15일전에 반드시 허가 관청에 허가갱신 신청을 하여야 함.
 - 2) 만일 유효기간에 허가를 갱신치 않고 총기를 계속 소지할 경우 형사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은 물론 소지허가는 당연 취소되며, 총기는 불법무기로 회수됨.

단, 경찰서에 임시 영치 중인 총포에 대해서는 영치해제시까지 갱신을 유보할 수 있음.

- 나. 총기를 남에게 빌려주어서는 안되며 또한 남에게 빌려서도 안됨.(법 제21조제4항)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71조 제3호))
- 다. 총기는 허가 받은 용도에 사용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소지·운반·장전·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법 제17조 제2항).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73조 제4호)

라. 허가관청에서 실시하는 일제점검을 받아야 하며(법 제42조 제7항) 받드시 검사필증을 부착 휴대하여야 한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72조 제3호))

- 마. 기재사항 변경사유 발생시는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함.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바. 총기를 도난 당하거나, 잃어버린 때에는 지체없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2. 허가의 반납
 - 가. 허가를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소지허가증과 총기를 관할경찰서에 반납하여야 함.
 - 나. 총기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양수자가 소지허가를 득한 후 양도하여야 함.
- 3. 총기류 안전수칙
 - 가. 총기는 튼튼한 총기격납고나 시정장치가 있는 캐비넷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법 제 47조 3항, 시행규칙 제54조의3)(위반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 법 제74조제1항제6호)
 - 나. 총기 보관·휴대 또는 운반하는 경우에는 약실에 실탄이 없어야 하고(방아쇠를 당겨 격발), 총집(케이스)에 넣거나 포장하여야 한다.(법 제17조제3항)

(위반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 법 제74조제1항제2호)

경기용 총기 및 실탄의 사용 관리상의 준수사항

- ◎ 사격선수들이 사용하고 있는 총기와 실탄은 대회 또는 훈련에 사용될 경우에는 진정한 스포츠용품으로 인정을 받지만, 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불법적인매매·양도·증여 또는 변조 개조되는 경우에는 사회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위해물품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입니다.
- ◎ 대회와 훈련에 사용하더라도 안전을 위하여 세심한 주위를 기울여야 하며, 사용하고 관리하는 과정에도 해당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법적 제재가 수반되기 때문에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사용. 관리하여야 합니다.
- ◎ 총기·실탄의 사용 관리에는 총포화약단속법령에 명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 법령상 준수사항
 - 실탄의 양도·양수는 금지된다. 단, 경찰관서의 허가시에는 가능함.(법21-1)
 - 총기 및 실탄의 발견 또는 습득시에는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법23)
 - 총기 및 실탄을 도난 당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법35)
 - 실탄사용자는 사용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며, 작성한 화약류 사용대장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법63)
 - 상기 사항을 불이행시에는 10년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에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벌을 받게 된다.(법70, 71, 72, 73)

◎ 기타

- 사용 후 발생한 탄피는 최대한 회수하여 실탄보관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 각 팀별 총기·실탄 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총기·실탄 관리의 책임성의 한계를 명확히한다.
- ◎ 경기용 총기·실탄을 부적법하게 사용시 연맹의 징계규정을 참고하기 바라며, "모든 체육 인은 어디에서나 일상생활에 모범이 되고 밝고 바른 일의 역군이 된다."는 체육인 헌장을 실현하는데 사격인 모두가 적극 참여하기 바랍니다.